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번호 제24호 2002. 5. 17)

총무위원회
2002. 5. 27(월)

1. 심사경과

- 가. 2002. 5. 17 사천시장 제출
- 나. 2002. 5. 17 총무위원회 회부
- 다. 2002. 5. 23 사천시의회 제6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2. 제안설명요지(주민자치과장 성호영)

가. 제안이유

-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사용료 등의 관리·집행요령을 명확히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시키고
-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자율성 확대를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코자 함.

나. 주요골자

(1) 주민자치센터운영

- (가) 주민자치센터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또는“○○주민자치센터”로 함(안 제4조)
- (나)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등 분담, 주민자치센터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안 제7조)
- (다) 사용료등의 요율결정, 감면, 징수주체·관리·집행요령 등(안 제10조)
- (라)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안 제11조)

(2)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 (가) 위원회에 회부 의결·집행기능 부여, 자치기능수행 관련 토론확대등(안 제15조제16조)
- (나) 고문제도, 위원위촉 절차, 위원장 자격요건, 위원 주요인적사항 공개 등(안 제17조)
- (다)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의무화(안 제18조)
- (라) 위원 해촉요건 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 심의(안 제2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명돈)

-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자치위원

회의 활동 범위 확대와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자율성확대를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점은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